

NEWSLETTER

Contents

법률 정보 02

[General Corporate] 개정상법 소개 시리즈

(1) 개정상법에 따른 소수주주 주식 강제매수제도의 활용방법 02

(2) 개정상법상의 종류주식 제도 02

법률 개정 및 판례 뉴스 04

[General Corporate]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04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06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임박 07

‘오빠땀지?’-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신중을 기해야 08

[Tax]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양도시 시가 09

[Construction]

아파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어 11

[International Trade and Customs]

한-EU FTA, 이해와 활용 12

[Insurance]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 13

[Antitrust]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다시 본다 14

[Product Liability]

국내 담배소송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 - 원고패소 15

[Environment · Climate Change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17

[Media Contents · M&A]

미국 Comcast의 NBCU 인수에 대한 조건부 승인과 의미 19

[Insolvency & Corporate Restructuring]

재도약 날개 단 쌍용자동차 - 회생절차의 성공적 종료 20

[China] 상해에서 적격 외국유한파트너(QFLP)제도 시범 실시 22

[Litigation Cases]

형사판례 24

민사판례 25

주요업무사례 27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승소 27

재개발조합 집행부에 대한 무죄판결 28

아파트 대지권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분양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구할 수 없어 30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책임을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에게 물을 수는 없어 31

지상과 재송신관련 가처분 승소 31

외국환 중개인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32

공동명의 분양수입금계좌의 예금채권 귀속에 관한 법리 32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불기소처분 33

보험계약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3

보험사고의 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았어도 사기죄가 되지 않음 34

차량용 내비게이션 배터리팩 발화에 따른 제조물책임 사건 승소 35

수자원공사, 서울시와의 용수료 분쟁 승소 35

통화옵션계약 체결의 의미 밝혀 승소 36

쌍용건설 M&A 무산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 허용될 수 없어 36

동양메이저 유상증자 자문 37

동양생명 매각 등 자문 37

SHIN & KIM 소식 38

[General Corporate]-장재영 변호사 | 전재민 변호사 개정상법에 따른 소수주주 주식 강제매수제도 (Freeze-Out제도)의 활용방법 (지배주주에 의한 “축출” 또는 소수주주의 “탈출”)

개정상법(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에서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소수주주 강제매수제도(이른바 “Freeze-Out” 또는 “Squeeze-Out”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사발행주식 중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하여 소수주주를 회사의 경영에서 ‘축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할 것
2.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
3. 소수주주의 공정가액에 대한 공인 감정인의 평가 및 그 감정결과에 대한 공개

특히,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의 해석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소수주주를 축출하고자 하는 의도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수의 소수주주로 인하여 과다한 관리비용이 발생하거나, 소수주주의 방해나 주주권 남용으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갖추어진 정당한 강제매수청구인지, 상법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소수주주 지분에 관한 공정한 가액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 지분의 지분가치 평가에 관한 방법 및 그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매수제도를 통해 주식분산비율을 낮춰 상장폐지하거나 실질적인 폐쇄회사로 전환한 후 위와 같은 소수주주 강제매수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Cash-out Merger” 제도가 개정 상법에 도입되었는 바, 지배주주의 배타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러한 제도와 소수주주강제매수제도가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개정상법은 소수주주에게도 ‘언제든지’ 자신의 보유 주식을 지배주주에게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 (Sell-out Right)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는 이 권리를 통해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자신의 지분을 지배주주에게 매각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소수주주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바, 지배주주는 개별 소수주주가 매각권리를 행사할 때마다 매번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eneral Corporate]-김병태 변호사 | 정수용 변호사 개정상법상의 종류주식 제도

종래 현행 상법에서 규정된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회사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에 개정상법에서는 자본시장의 수요에 따라 회사가 다양한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상법에서 종류주식과 관련하여 보완되거나 새로 도입된 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 봅니다.

주요개정내용

1. 개정상법 상의 종류주식은 (i)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ii)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다른 내용을 가진 종류주식, (iii) 상환주식 및 (iv) 전환주식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경우 과거 종류주식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였는데, 개정상법에서는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역시 종류주식으로 분류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344조).
2. 종래 이익배당우선주는 정관에 최저이익배당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고 (i) 배당재산의 종류 (이는 개정상법에서 현물배당을 허

용하게 되면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ii)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및 (iii)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액을 우선배당하는 이익배당우선주 (예컨대, 주당 500원의 이익을 우선 배당함) 또는 이익배당우선주의 배당률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변동배당률부 이익배당우선주도 발행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344조의2).

3. 개정상법 상으로는 종래 허용되던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 외에 의결권 없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 및 보통주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면서 의결권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선적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존 상법 제370조가 삭제되어, 정관으로 의결권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4조의3).
4. 또한, 개정상법에 따르면 전면적인 무의결권 주식 외에도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의결권 제한 주식의 발행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영업양도, 합병, 정관개정 등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정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지는 주식, 예컨대 영업양도, 합병, 정관개정 등을 위해서는 특정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소위 “거부권부 주식”은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 상 흔히 규정되는 소수주주의 거부권을 회사법 상으로 보장받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44조의3).
5. 개정상법은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경우 일정한 상환 또는 전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류주식을 전환, 상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후자의 경우 회사에게 일정한 통지 의무를 부과 하였습니다 (제345조, 제346조).
6.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나 다른 자산으로도 상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환 시에 회사가 사채 등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45조 제4항). 다만, 개정상법에 의하면 보통주식을 상환주식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345조 제5항). 이는 보통주식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환

하여 아직 도입되지 않은 Poison Pill과 유사한 경영권 방어 효과의 효과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종류주식에 관한 상법개정의 시사점

종류주식에 관한 이번 상법의 개정은 현행 상법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태도에서 벗어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다양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상법에 의하면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종류주식의 조건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관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가 어떠한 범위까지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기준은 주식평등의 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회사법의 원리와 이사의 주의의무의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주주 등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상법에 의한 종류주식을 도입하는 회사로서는 종류주식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정관을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General Corporate]

- 김범수 변호사 | 조희영 변호사 | 석근배 변호사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다85027 판결)****1. 관련 규정 및 쟁점**

상법은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 도입된 후, 구 증권거래법이 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되면서 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3에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 중 본건에서 문제된 재직기간 요건에 관하여, 상법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3 제4항)."고 규정하면서도, 동법 시행령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시행령 제9조 제5항, 이하 "비자발적인 퇴직")에는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와 같은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비상장회사의 임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해석에 의하여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예외적

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법적 성격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본 판결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비상장회사 임직원의 재직기간 요건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그 시사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사안의 개요

비상장회사인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2002. 2. 28.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 회사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하 '본건 스톡옵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03. 3. 2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퇴직사유를 '분사(사업구조조정)'으로 기재한 퇴직원 및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여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08. 9. 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본건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내지 본건 스톡옵션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신은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요건에 적용을 받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건 스톡옵션계약의 이행 즉, 주식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i) 원고의 퇴직은 퇴직원 및 서약서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구조조정과 무관하며, (ii) 설령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40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쟁점은 비상장회사의 임직원인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상황에서, 설령 그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였습니다.

3. 판례의 요지**(1) 1심 법원 및 고등법원**

1심 법원 및 고등법원은, “상법 제340조의4의 재직기간 요건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에게는 불리한 규정으로서 자칫 회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 퇴직한 경우에는 위 재직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위 상법규정이 회사의 정관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계약에 의해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위 상법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비록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i) 비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및 상장회사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및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그간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ii) 위 각 규정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iii)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회사, 부여 대상 및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iv)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 충실을 유도하려는 제도인 점, (v) 상법 규정은 주주, 회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및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의 의의

종전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중

재직기간 요건에 관한 규정 내용의 차이로 말미암아, (i)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및 (ii)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장회사에 대하여 상장회사와 같이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을 통하여 (i)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요건에 차이가 있으며, (ii)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적용되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iii) 비상장회사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iv)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서도 이를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논란을 일단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i)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이 제공하는 장래의 서비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보수를 보완해주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제도의 본질 및 취지에 기반하여, (ii) 상법 규정이 주주, 회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도입된 배경, 입법 연혁, 규정 취지 및 문언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명문 규정에 없는 예외 사유를 해석에 의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대법원 판결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또는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유추) 적용하거나 해석론을 통하여 상장회사의 경우와 같은 예외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비상장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인해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비상장회사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업무의 예측가능성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인은 본건의 피고 회사를 대리하면서 (i) 주식매수선택

권 제도의 본질 및 단체법적 특성을 강조하고, (ii) 명문 규정, 입법 연혁 및 제도의 취지 등을 통하여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본건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본건에서 쟁점이 된 비상장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를 비롯하여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 장주봉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따르릉”,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00의 상담원입니다”, “00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아, 고객님. 일전에 고객님의께서 ㄹㄹ회사의 ㄷㄷ제품을 구입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상황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분명 A라는 회사와 거래를 하였는데 난데없이 B회사, C회사 등에서 상품홍보나 구매권유 전화를 걸어 올 때엔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따져 물으면 상담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제공에 관해 이미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소비자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헌법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즉 ‘자기정보통제권’을 개인에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일찍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개인정보침해사례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되고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

그러면 사업자들이 “기타 자사 또는 타사 관련제품의 홍보”, “상품판매를 위한 TM(텔레마케팅)” 등과 같은 용어를 이용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것일까요. 대답은 “적법하지 않다”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포괄적·추상적 용어를 통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휴 사업자들의 TM 영업을 위해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관련 기관들은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질의회신을 통해 오랫동안 일관되게 이용자의 동의는 포괄적인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동의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됨을 전제로 한 이용자의 동의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도대체 무슨 내용에 관해 동의하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하며 그 이용목적이나 이용범위를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포괄적·추상적 용어를 통해 획득된 동의는 분명 적법한 동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이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최근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대해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대외적 이미

지 제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나 관련 임직원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이제라도 이용자로부터 받은 포괄적인 동의는 적법한 동의가 아님을 유념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동의서류들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 장주봉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임박

개인정보보호법(안)이 2011. 3.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가결되었고, 곧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게 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의 기본적인 법률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아니지만 정보통신망법이 준용되던 여행사, 호텔, 항공사,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사항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 또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중에 어느 법률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법률들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고객의 동의 방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고객의 동의

기존에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던 경우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이후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동의의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고려하여 동의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이후에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이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종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신중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위탁절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들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부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와 같은 위탁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위탁과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거나 개인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위탁과 관련된 규제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업무 외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와의 계약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출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종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이 우선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에 규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형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 장주봉 변호사

‘오빠민지?’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신중을 기해야

1. 오빠민지?

최근 지인들 사이에서 서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오빠민지가 화제가 되었었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임의로 설정하여 오빠민지 어플리케이션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어디게라는 어플리케이션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민

지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 보면 개발자인 젊은 벤처기업인이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안타까운 뉴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위치정보 이용 서비스의 증가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국내에서도 스마트폰의 보급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도 그에 따라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태블릿PC도 사실상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스마트폰과 유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에 이용되던 GPS 관련 기기(내비게이션 등)에 이동통신 또는 WiFi 접속기능을 추가하여 현재 위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치정보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경로검색, 주위의 관심장소 검색, 위치기반 광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정보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현재 위치나 과거의 위치를 수집할 수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용자가 타인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이용되고 유출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위치정보법에 따른 규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허가, 이용자의 보호 및 권한보장,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치정보서비스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위치정보 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자나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자는 그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용자는 수집된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열람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위치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유의사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위치정보서비스는 대상자의 측면에서나(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보급 확대) 그 내용에 있어서나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위치정보법에 따른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인허가나 이용자의 동의와 같은 다양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하여야 하지만, 위치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적 내용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치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한 인허가 업무 및 기타 위치정보와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ax] - 조춘 변호사 | 정인화 회계사 | 김성준 회계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양도시 시가

2011년 1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2008두4770 판결, 이하 “본건판결”이라 합니다)을 하였는바,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이하 “본건주식”이라 합니다)을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양도일의 본건주식의 1주당 증권거래소 시가(始價, 이하 “당사자거래가격”이라 합니다)에 양도한 사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에서 당사자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합니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동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2. 관련규정

(본건판결은 2002년의 거래에 대한 것이나, 현행 법령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현행 법령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합니다), 이 때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 소득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이라 합니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세부담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

이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거래실적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상 부담행위계산부인규정과 관련하여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와 같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 2·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체계, 부담행위계산부인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의 부담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하여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되며, 최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동 평균액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본건판결의 적용범위

따라서 개인이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동 개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거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거래소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바 (국세청해석, 서면2팀-1883, 2006. 9. 21 참조),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건판결의 결정과는 달리 양도일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0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 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 따라서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 과의 거래시에도 우선적으로 법인세법상의 시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건판결은 개인이 (i) 특수관계자인 개인이나 (ii) 특수관계자인 비영리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 여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Construction] - 심재두 변호사 | 이승수 변호사

아파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또 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분양을 미루거나 사업계획 자체 를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고,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사업 장에서도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미루거나 분양계약의 취소, 해 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천곡동 528번지 일대에 건설, 분양된 벽산블루밍아 파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분 양자들이 입주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사인 극동주택개발 주 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소송 당사자인 극동주택개발은 물론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들 은 물론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수 분양자들에 대해서까지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상 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극동주택개발과 벽산건설은 부동산, 건설 분야에서 두 각을 나타내고 있는 굴지의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 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세종이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쟁점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분양대금의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

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분쟁이 전국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판결은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을 경우에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책임 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쟁점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관하여 대 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을 경우에,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은 약정일까지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 양대금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 허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식논리적으로 따지면 위와 같은 수분양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었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① 원고들이 예정대로 입주하여 상당기간 동 안 거주해 오고 있었다는 점, ②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 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 ③ 수분양자들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 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 ④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 의 이행을 보증하고 사업부지를 신탁받아 대지권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가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지 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해제 권의 행사가 허용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였 고, 재판부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수분양자들은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 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함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 인 세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는 대지 사용권 역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지권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매각이 불가능해지거나 시가 하락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없고,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들이 전유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수분양자들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 판부도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손해배

상청구 역시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Trade and Customs]

- 조영재 변호사

한-EU FTA, 이해와 활용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와의 FTA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1일 발효 예정인 한-EU FTA는 최초의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라는 점에서 기존의 FTA보다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체결국간에 교역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여타 교역국과의 교역에 비해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FTA에는 이러한 관세 자유화 이외에 상품 교역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관계에 있어 시장을 개방하고 더 나아가서 개방된 범위에 있어서는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TA 체결국간에는 단순히 상품 교역이 확대되는 것을 넘어 서비스, 투자 등을 포괄하면서 전체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FTA는 체결국간 및 개별 체결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작동하게 되므로 경제시스템의 조화, 통합도 진전되게 됩니다. 특히, EU, 미국 등 선진국과의 FTA는 해당국의 상품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우리 경제 시스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한-EU FTA를 상품 특혜관세와 비관세장벽, 서비스·투자로 구분하여 그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충족해야,

한-EU FTA에서는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EU가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섬유, 신발 등에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관세 철폐의 폭과 속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FTA에서의 특혜 관세는 해당 상품이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상품

이 체결국의 것인지는 해당 FTA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 규정은 해당 상품에 따라서 체결국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생산 또는 획득된 경우(완전생산기준), 비원산지재료가 결합되어 체결국 영역 내에서 획득된 상품으로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실질적 변형기준)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중요한 실질적 변형기준에 있어서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여부는 이 과정을 통해 비원산지재료가 체결국내에서 HS 세번이 변경되었는지 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결정 됩니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의 충족을 위해서는 i) 협력업체 공급원재료를 포함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확인, ii)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해당 상품의 공장도가격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의 정확한 산정, iii) 부가가치율 산정 근거가 되는 원가자료의 정합성 확보 등 철저한 사전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편 특혜 관세를 적용 받게 되는 경우, EU는 수입건의 0.5%를 선별하여 원산지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FTA협정문 및 양 당사국 국내법령의 해석,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산지 대응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부터 통상법률, 관세, 회계, 전산 전문가의 공동 참여가 필요합니다. NAFTA 등 선진국이 체결한 FTA 사례를 보면 원산지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산시스템이 가지는 정량성, 확실성의 한계로 특정 상품에 대한 사후 검증 과정에서 법률적인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막대한 금액의 관세를 소급 추정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00유로 이상의 상품 수출시 인증수출자 지정 받아야,

한편 한-EU FTA에 따르면 특정 상품의 수출자는 상대국 세관에게 송품장신고서(Invoice Declaration)를 통해 해당 상품이 수출국 원산지임을 신고하여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00유로 이상의 상품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은 수출자만이 송품장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U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는 1만 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은 업체는 아직 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 7월1일 한-EU FTA 발효 후 수출시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 신청이 어려워지므로 원산지증명 능력을 확보하여 인증수출자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기존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선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을 신청하고 추후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확대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품목별 비관세분야, 서비스 및 투자개방 확대에도 주목해야,

또한 한-EU FTA는 특혜관세 이외에 품목별 비관세조치, 서비스 및 투자개방조치 등을 포괄하고 있어 우리나라 및 EU 역내에서의 규제환경 및 경쟁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적합성 평가에 있어 EU는 한-EU FTA 발효 즉시, 우리나라는 발효 3년까지 공급자 적합성 선언방식(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는 EU산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전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인정해주거나 또는 배출가스 기준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의약품분야에서는 판매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실시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는 것도 한-EU FTA 비관세조치의 예로서 관련 업체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 및 사전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한-EU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EU측에게 115개 서비스 분야를, EU는 우리나라에게 139개 서비스분야를 개방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방한 78개 서비스 분야보다 37개 분야가 늘어난 것으로 전문직 서비스, 사업·운송·유통·건설·금융·통신·환경 등의 분야에서 EU 인력 및 기업의 국내 진출 및 관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EU 서비스시장 개방의 확대로 수의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대EU 진출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시장 개방뿐 만 아니라 제조업, 광업 등 비서비스업 분야 투자에 대해서도 상대국에 대하여 내국민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을 강화함으로써 상호간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EU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효되는 거대 선진 경제권과

의 FTA로서 현재 발효되고 있는 여타 FTA 보다 우리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기회 및 위기를 적시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협정문 및 양허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GATT 및 WTO 개별 협정들의 상당 부분을 FTA 협정문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을 뿐더러 각 체결국의 국내법령과 연계되어 작동되므로 기업의 현업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일반적인 국내법 및 회계자문을 통해서는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으며 중재패널 등 한-EU FTA 자체가 마련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에의 대응까지 감안 한다면 FTA 활용전략 수립단계에서부터 통상법률, 관세, 회계, 전산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EU FTA는 2011년 7월1일 발효가 이행의 완성이 아니라 그 이행은 양 당사국 정부의 법령, 규정, 판정 등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우리나라 및 EU 정부의 정책, 제도 변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본 리걸업데이트는 무역협회가 발간하는 International Trade 4월호에 필자가 기고한 내용임

[Insurance]

- 홍세렬 변호사 | 조춘 변호사 | 박지윤 변호사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

최근 장기보험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업계의 이목을 끌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7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

협계약"이라 합니다)을 제출한 자료,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보험업법(2006. 08. 29. 법률 제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및 항소심은 모두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료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으나, 1심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보험료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 납입일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판시한 반면, 항소심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자가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비로소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i)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ii) 보험법이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 및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각각 1년과 2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며, (iii) 나아가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종속시키고 보험계약자의 자의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하게 되어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선의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결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파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62조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불입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Antitrust] - 임영철 변호사 | 조창영 변호사 | 박주영 미국변호사 | 김현아 변호사 | 백대용 변호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다시 본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이는 제조업자 및 서비스업자와 그 다음 단계 사업자인 대리점, 유통업자 등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가격제한에 관한 합의라는 점에서 경쟁사업자간 수평적 관계에서의 합의와 구별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수직적 가격제한행위(vertical price restraints)’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 구조로 인하여, “최고가격유지행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이 살펴

야 하나, 그 반대인 “최저가격유지행위”는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정당성에 대한 사업자의 반증도 허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법원은 1911년 Dr. Miles 판결에 따라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보아 오던 입장을 계속 유지하여 왔으나 2007년 Leegin 판결에서 약 100년 동안 고수해 오던 당연위법원칙을 포기하고 합리의 원칙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판결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위법처럼 취급하는 규제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의 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2010. 11. 25.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비록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던 당연위법 원칙에서 사안별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합리의 원칙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①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②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③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④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판결).

3.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의 내용

이후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금년에 다시 한번 재확인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업자의 최저가격재판매행위에 해당되지만 하면 위법한 것일 뿐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이를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들은 미국 대법원의 Leegin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시켜 주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roduct Liability]

- 박교선 변호사 | 임보경 변호사 | 조희영 변호사

국내 담배소송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 - 원고패소

1999년 7명의 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KT&G를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약 8년 후인 2007. 1. 25.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모두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 담배제조자인 피고회사의 위법행위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이 항소하였고, 4년간 항소심이 진행된 결과 항소심에서도 위 2사건에서도 다시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폐암 중에서도 2종류의 폐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역학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위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배의 의존성이 흡연자의 자발적 금연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고, 흡연과 금연은 어디까지나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담배제조자가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것이 없었음이 밝혀졌고, 나아가 담배제조와 관련된 제조물책임도 인정되지 않았기에 결국 원고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무려 12년간이나 진행되어 온 첫번째 흡연소송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본 판결은 매우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측은 미국 담배소송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한국소송에서 그대로 원용하며 마치 담배제조사에게 치명적 위법행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피고측은 수많은 과학적 문헌 등을 통해 위 주장들을 철저히 반박했고, 결국 원고측 주장은 법원에 의해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의 역학과 관련된 인과관계 판단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고엽제 사건과 자동차배출가스 사건 등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바, 이 사건들은 모두 범법적인 세종에서 대리하고 있습니다. 범법적인 세종은 그동안 진행된 담배소송, 고엽제소송, 자동차배출가스소송 등 국내의 가장 굵직한 제조물책임소송을 모두 수행해왔으며, 주요 소송들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제조물책임소송 분야에서 타 로펌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입증책임의 완화

법원은 이 사건이 공해소송과 차이점도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불법행위와는 달리 원고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해소송의 입증책임 완화법리를 유사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폐암이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질병이 그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학연구결과로 밝혀진 점들인 ① 흡연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금연의 가역적 효과(reversibility)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20갑년 이상의 흡연력 등)과 ② 발생한 개별적인 폐암이 일반적 폐암보다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사정(편평세포암, 소세포암)이 증명된 경우에는 흡연이 폐암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있는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반증으로 위 흡연자들의 폐암이 전적으로 혹은 주요하게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7명의 흡연자들 중 4명에 대해 흡연과 그들의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으나 피고로서는 이러한 추정법리의 원용이 이 사건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지는 아니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기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제조물책임 법리

법원은 이 사건은 제조물책임법리상 입증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담배 자체에 결함도 없고,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배는 기호품의 일종으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지 않고, 담배에 유해물질이 존재한다고 해도 대부분 연초의 연소생성물이며 피고는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타르 등 함량을 감소시켜 왔고 법률에 의해 제조가 허용된 권리를 제조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니코틴 의존증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니코틴 의존 정도가 자발적 금연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며, 니코틴은 자연상태의 담뱃잎에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를 태워 흡입하는 흡연방법도 피고가 개발한 것이 아니므로 니코틴의 존재가 “결함”은 아니라는 점과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일반 불법행위

원고측은 그 동안 피고가 홍보책자를 배포하여 담배에 대한 거짓정보를 전달하고, 저타르저니코틴 담배가 될 해로운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였으며, 자체 연구소의 연구결과 및 해외 연구결과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였고, 해로운 첨가제를 사용하며 니코틴을 자유로이 조작하고, 소비자보호법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들을 하여왔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측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였고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Environment · Climate Changes]

- 김현아 변호사 | 정수용 변호사 | 류재욱 변호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도입이 논의되어 왔던 배출권 거래제도(이하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이 2010년 11월 1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기존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존 제정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아야 하고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는 정부의 입장과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예상보다 클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재고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산업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정부는 국무총리실공고 제 2011-7호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하 “수정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존 제정안과 비교하여, 수정 제정안은 i)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의 유동적 조정 가능, ii)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될 경우 목표관리 대상업체에서 제외, iii) 제1차 계획기간 중 무상할당 95%이상, iv) 차기 계획기간으로의 배출권 이월 가능, v) 과징금 및 과태료의 인하 등의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수정 제정안의 주요 추가 · 변경 내용

이하에서는 수정 제정안의 주요 추가 · 변경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정안의 내용은 법무법인 세종 Legal Update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안 제5조 제1항)

기존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

위의 배출권 거래제의 계획기간에 대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수정 제정안은 5년 이내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의 계획기간에 대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계획기간이 보다 유동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6조 제4항)

기존 제정안에는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배출권거래제법의 주관부서인 환경부장관이 가장 유력하였으나, 환경부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담당할 경우 산업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로 인해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목표관리제와의 관계(안 제7조 제2항)

기존 제정안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를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함으로써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중복 규제 논란이 있었으나, 수정 제정안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될 경우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중복규제의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4) 할당의 방법(안 제8조 제1항)

기존 제정안은 제1차 계획기간 중의 무상할당 비율을 전체 할당량의 9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수정 제정안은 이를 95% 이상으로 높여 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배출권 거래참여(안 제12조 제4항)

수정 제정안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의 성질에 부합되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금융투자상품의 형태로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안 제14조 제1항)

기존 제정안은 할당 대상업체가 배출권을 제출한 후 배출권을 초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획기간 간의 이월은 허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수정 제정안은 초과분을 다음 이행연도 및 차기 계획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은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안 부칙 제4조).

(7) 금융·세제 상의 지원 등(안 제28조)

기존 제정안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감소 방지를 위한 제도로 저탄소녹색기금의 설치만을 규정하였으나, 제정안은 저탄소녹색기금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과징금(안 제31조), 과태료(안 제33조)

제정안은 할당 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이산화탄소 1톤당 당해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출권의 제출을 하지 않은 자 및 허위로 보고한 자 등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제정안이 이산화탄소 1톤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당해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여 수정 제정안은 기업의 부담을 보다 완화시켰습니다.

(9) 청정개발체제사업 관련(안 제34조)

정부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와 관련된 사업의 정부승인과 이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 제1차 국가할당계획기간(안 부칙 제2조)

수정 제정안은 최초로 시작되는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기존 제정안에 따라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강행하려 하였으나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도입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수정 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기존 제정안	수정 제정안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제5조 제1항)	5년 단위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장 (제6조 제4항)	(신설)	기획재정부 장관
목표관리제와의 관계 (제7조 제2항)	중복 규제	배출권거래제만 적용
제1차 계획기간 중 무상할당 비율 (제8조 제1항)	90% 이상	95% 이상
배출권 거래참여 (제12조 제4항)	(신설)	자본시장법 규정의 적절한 준용
배출권의 이월 (제14조 제1항)	이행연도 간 이월 허용, 계획기간 간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이행연도 간 이월 허용, 제2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계획기간 간 이월도 허용
금융·세제상의 지원 (제28조)	저탄소녹색기금 설치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 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 한 지원
배출권 부족분 과징금 (제31조)	1톤당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5배 이하	3배 이하
배출권 미제출 등 과태료 (제33조)	5,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청정개발체제사업 (제34조)	(신설)	CDM 관련 사업의 정부승인과 이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제도 운영 가능
제1차 국가할당 계획기간 (부칙 제2조)	2013. 1. 1. ~ 2015. 12. 31.	2015. 1. 1.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2. 향후 전망 및 과제

수정 제정안은 산업계의 과다한 비용 부담 및 국가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여러 측면에서 산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존 제정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정하고, 제1차 계획기간 중 무상할당 비율을 5% 인상하였으며, 배출권 미제출 시 과징금 액수를 낮추고,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의 중복을 피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계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여부를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거나 제1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출권거래제 실시와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2012년 이후 목표관리제의 시행에 따른 목표설정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최대한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출권거래제가 가지는 시장친화적 규제로서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배출권 거래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Media Contents · M&A]

- 이성훈 변호사 | 천준범 변호사

미국 Comcast의 NBCU 인수에 대한 조건부 승인과 한국 미디어 시장에서의 의미

지난 2011. 1. 18.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9년 말 이후 1년 넘게 끌어 왔던 미국 1위 케이블TV 사업자 Comcast의 NBC Universal (NBCU) 인수 거래를 승인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미국 내 시장점유율 1위 MSO (Multiple System Operator)인 Comcast가 마침내 NBC TV Network 내 11개 지상파 방송국 등을 보유한 NBCU를 인수하여 막강한 콘텐츠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요 승인 조건은 합리적 접근 보장과 경쟁 제한성 완화를 위한 조치

다만, FCC는 승인 조건으로 Comcast가 향후 7년 동안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 보유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자(MVPD)의 합리적 접근(Reasonable Access) 보장
- 온라인 경쟁에 대한 보호 조치
 - 모든 경쟁자(MVPD)들에게, 공정한 시장가치 및 비차별적인 가격과 조건으로(at fair market value and non-discriminatory prices, terms and conditions), Comcast의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경쟁자의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것
- 채널 편성에 있어서 계열관계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
- 기타 다양성, 지역성 등 공적 가치에 대한 보호

그런데, 위와 같은 FCC의 승인 조건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을 흔든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이고, 다른 하나는 SBS의 월드컵 단

독 중계방송 사건입니다.

국내 미디어 산업의 구조 재편에 따른 승인 조건도 유사

지난 2009년 말 우리나라에서는 CJ오쇼핑이 콘텐츠 강자인 온미디어를 전격 인수하는 거래(기업결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래와 같은 조건(행태적 시정조치)을 붙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제도의 차이로 인해 미국과 심사 및 발표 주체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미국 FCC의 승인 조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 경쟁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특히, IPTV)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채널(콘텐츠) 접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종전의 기준에 준하여 채널(콘텐츠)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여전히 모호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어렵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즉, 미국 FCC 승인 조건과 공정위 시정조치에 등장하는 “공정”, “비차별적”, “동등한 기회” 등의 요건 판단을 위해서는 가격 등 수많은 거래조건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규제 당국이 이러한 시정조치 또는 조건 위반을 이유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6조 제3항과도 유사합니다. 다만 지난해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 과정에서는, 과연 어떠한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차별 없는” 제공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에서 판단 기

준의 정립 필요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 케이블, IPTV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 등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인기 콘텐츠와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를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지난해 인수된 온미디어 계열을 포함한 CJ 계열 미디어 사업자들이 3월부터 CJ E&M으로 통합되어 출범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의 개국이 속속 예정되어 있으며, 민영 미디어 앱의 도입 역시 예정되어 있는 등 미디어 시장이 유례 없는 격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디어 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이번 Comcast의 NBCU 인수가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향후 콘텐츠 제작부터 시청자에 대한 도달까지 수직계열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미디어 시장의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제한 등 각종 구조적 조건보다는 “합리적 접근”, “공정한 조건” 등 콘텐츠의 유통 과정에 부과되는 행태적 제한들의 해석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Insolvency & Corporate Restructuring]

- 이영구 변호사 | 김용호 변호사 | 최효종 변호사

재도약 날개 단 쌍용자동차 - 회생 절차의 성공적 종료

2008년 하반기 전세계를 덮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인 쌍용자동차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 회생절차(일명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쌍용자동차는 77일간의 대규모 파업사태 등 뼈를 깎는 시련을 겪은 끝에, 채무재조정 및 자본감소를 주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마련하고, 마침내 인도의 자동차 그룹인 Mahindra & Mahindra Group(이하 “M&M”)에 인수되어 성공적인 회생절차 종결을 앞두고 있다.

1.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배경

2008. 9.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 등으로 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IMF위기를 극복한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한국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 원자재가격 및 환율의 급등으로 또다시 휘청거렸고, 수많은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파산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특히 쌍용자동차의 경우는 유가폭등으로 인한 SUV 및 대형차량수요 급감, 장기간의 워크아웃 절차진행(1999. 12. - 2005. 1.) 등으로 인하여 타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투자 등의 이유로 금융위기의 충격을 더욱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2008년말에는 가용현금이 고갈되었다. 이에 따라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무법인 세종을 신청대리인으로 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었다.

2. 시련과 파란 - 사상 초유의 대규모 파업사태 등 회생계획안 인가과정

2009. 2. 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쌍용자동차는 회사의 존속가능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통합도산법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해 법원에 보고하여야 했고, 이에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은 대규모의 인력구조조정 및 신규차량(코란도 C) 개발자금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쌍용자동차의 계속기업가치(약 1조 3천억원)가 청산가치(약 9천 4백억원)를 초과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쌍용자동차는 급여삭감 등 강도높은 자구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회사의 회생전제조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총인원의 1/3을 초과하는 2,600여명을 구조조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09년 여름, 국가적 위기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갈등을 가져온 77일간의 이른바 '쌍용차 파업사태'가 발생하였다. 위 파업사태의 처리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불된 끝에 파업이 종료되고 쌍용자동차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여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었다. 이를 전후하여 지역사회에서도 쌍용차 구입운동이 벌어지는 등 회사의 회생을 위한 전기가 무르익었다.

이후 쌍용자동차는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재조정, 기존 주주들에 대한 자본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정 채

무감면률 및 무상감자율을 두고 국내외채권자 및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 등의 주주들과 지난(至難)한 협상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끝내 회생채권의 8% 감면조건에 부동의한, 2억유로 규모 해외사채권자들을 포함한 일부 회생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 반대에 따라 회생계획안은 2009. 12. 1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들의 99.69%, 주주들의 100% 찬성에도 불구하고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이 51.98%만 찬성한 탓에(법정가결요건 66.7%) 부결되었다. 이에 법원은 추가적인 심리 끝에, 회생계획상 변제율이 파산시 청산배당률을 상회하는 점, 해외사채권자들의 반대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점, 협력업체 연쇄부도 및 지역사회경제 위축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09. 12. 17.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하는 실무상 흔치 않은 결정을 내렸다.

3.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모색 - M&A 추진과정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을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쌍용자동차의 재무구조 및 국내외 영업상황상,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안정적 조기생존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이에 쌍용자동차는 초기에 안정적 회생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으로는 M&A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쌍용자동차는 2010. 2. KPMG, Macquarie, 법무법인 세종을 공동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2010. 5. M&A 공고를 내게 되었다. 세계각국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teaser memo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의 결과, 입찰마감시에 M&M, 르노닛산 컨소시엄 등 6개사가 인수희망서를 제출하였고, 예비심사 후 입찰서 제출시에는 3개사가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쌍용자동차는 2010. 8. 12. 입찰최고가를 제시한 인도의 M&M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0. 8. 23. MOU를 체결한 이후, 3개월 간의 지리한 본계약 체결협상과정을 거쳐 드디어 2010. 11. 23. 인수대금 5,250억원, 인수인 M&M에게 70%의 지분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투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 차례나 거래조건 협상에 진통을 겪고 M&A가 무산될 위기까지도 있었으나, 쌍용자동차와 M&M은 끝까지 협상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인내와 상호타협으로 결국 투자 본

계약체결에 성공하였다.

4. 최후의 고비 -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과정

위와 같이 투자 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곧바로 쌍용자동차의 M&A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었다. 위 인수대금은 쌍용자동차의 기존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했으므로(원 회생계획안 대비 회생채권자 채권변제율 약 65.7%), 통합도산법의 규정상 다시 한 번 변경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재감면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관계인집회의 절차과정을 거쳐야 했다.

쌍용자동차는 원 회생계획안 때에 일부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유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communication의 부족이라고 결론짓고, 채권재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의 마련과 동시에 적극적인 채권자 설득노력을 진행하였다. 국내외 상거래채권자들과 공모사채 채권자들에 대하여 수 차례 전국을 순회하며 M&A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자료를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M&A 및 변경회생계획안 동의필요성에 대한 전방위 설득을 진행하였음은 물론, 원 회생계획안 결의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2억유로 해외 전환사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수 차례의 M&A 전화설명회개최, 설명자료 이메일 전송 및 1:1 대면접촉설득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채권자 대다수의 변경회생계획안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후 2010. 1. 28. 개최된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쌍용자동차의 노조 임원들이 과거의 강경투쟁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회사의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협력업체 상거래채권자들 역시 M&A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하였다. 곧 이어 투표가 시작되었고, 쌍용자동차의 변경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100%, 무담보 회생채권자의 94.2%, 주주 조의 100%라는 압도적 동의를 받아 가결되고, M&A가 추진되었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인수인 M&M에 대하여 70% 지분의 신주발행을 마치는 등 순조로이 M&A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략 3월 초순 경으로 예정된 회생채무 변제를 완료하면, 3월 중순 정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에서 최종해방될 예정이다.

5. 결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기의 부침에 따라 기업의 도산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사회현상이며, 이에 따른 적정한 기업구조조정절차의 진행 역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진행은, 2005년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 가장 큰 회생회사가 2년여라는 비교적 단기에(종전의 회사정리절차는 10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하였음) 성공적으로 M&A를 거쳐 종결되는 case로서, 경제적 시사점 이외에도 그 법률적 시사점이 자못 크다. 위헌성 논란이 컸던 구 기촉법(2010. 12. 31.자로 폐지)상 워크아웃 제도를 대신하여,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가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시금석이 되었으며, 2년여간 회생실무진행과정에서의 각종 이슈처리과정은 향후 도산법제 전반의 이론 및 법리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실제로 쌍용자동차의 신규차입금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권(super priority)을 인정하는 통합도산법 개정까지도 있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개시신청대리 및 수백건의 회생절차 관련 법률자문을 포함하여 파업사태 관련 법률자문, M&A 매각자문사 법률자문업무 수행, 수십건의 각종 소송 등의 진행 및 국내외 채권자 설득과정 등 쌍용차 회생전과정의 제반 법률관련업무를 전적으로 도맡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종은 기업구조조정 관련법 분야의 강자답게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관련법률자문업무를 매끄럽게 수행하여 쌍용차의 회생성공에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China] - 최병선 변호사

상해에서 적극 외국유한파트너(QFLP)제도 시범실시

2011년 1월 11일 상해시금융서비스관공실(上海市金融服务办公室) 등 상해시 관련 정부당국은 <본시에서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 시범업무를 전개함에 관한 실시방법>1 (이하 “실시방법”)을 발표하여, 2011년 2월 10일자로 경 외 투자자의 중국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 적격 외국유한파트너)제도를 상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QFLP는 중국이 2002년 12월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적격 외국기관투자자)제도를 통해 해외 투자자의 중국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금융시장을 한층 더 개방한 조치로, QFII가 주식투자(investment in shares)를 의미한다면 QFLP는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경, 천진, 상해 세 지역간 QFLP제도 시범실시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였으나 상해시가 가장 먼저 QFLP제도를 시범실시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6장 40조로 구성된 “실시방법”은 주로 일정 조건을 구비한 해외 투자자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상해에서 사모펀드를 설립해 중국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과거 발표된 상해시 관련 규정에 기초하여 외상투자지분투자회사(이하 “FIEIE”) 및 외상투자지분투자관리회사(이하 “FIEIME”)(이하 FIEIE와 FIEIME를 “외자PE회사”라 함칭함)의 설립조건, 설립절차, 시범기업 선정 및 외환처리문제 등 방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국 외환관리당국은 외상투자기업이 외환자본금으로 중국 내 지분투자함에 대하여 매우 까다롭게 규제하여 왔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국가외환관리국 142호문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을 환전하여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반드시 정부심사비준부서에서 비준한 경영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내 지분투자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시방법”은 FIEIME가 외환자본금을 환전하여 취득한 위안화를 자신이 관리하는 사모펀드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시방법”에 의하면, 외자PE회사는 조건에 부합되는 중국 내 은행을 자금위탁관리은행으로 선정하고 국가의 외상투자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내 지분투자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해시 관련 심사비준부서에서는 심사를 거쳐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PE회사에게 외자PE시범기업자격을 부여하는바, 외자PE시범기업은 FIEIE의 모집자금의 최고 5%까지 출

자할 수 있는데 외자PE시범기업의 출자를 받은 내자 위안화 사모펀드는 여전히 “내국민대우”를 향수할 수 있어서 그 투자영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해외 투자자는 FIEIME를 통하여 FIEIE를 설립하거나 내자 위안화 펀드를 관리하는 방법, 내자 관리회사를 통하여 FIEIE를 관리하는 방안 등의 다양한 투자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의 실시와 함께 외국자본의 중국 사모펀드 투자가 일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해의 위상도 일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향후 관련 후속 정책의 발표 및 상해시 관련 정부당국의 실무취급을 통하여 외환처리문제 등 아직 명확히 하여야 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1. 《关于本市 展外商投资股权投资企业试点工作的实施办法

[Litigation Cases] - 이용성 변호사

형사 판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정의 ‘정보’와 ‘훼손’의 개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의 ‘정보’의 의미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등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가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정보를 ‘훼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수소법원 외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 없음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뇌물수수)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 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문서작성에 관련된 사무처리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그 사무처리 과정에서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불성립 (2011. 3. 17. 2007도 482 업무방해)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측할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성립 (2011. 3. 17. 2007도482 업무방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표하는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공표하면 성립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증권거래법위반 등)

상장법인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감자 등을 할 법적 또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임직원이 그 감자 등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추진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감자 등의 검토 계획을 공표하면 투자자들이 그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거래에 나설 것이고 이로 인하여 주가의 변동이 초래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검토 계획의 공표에 나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의 오인·착각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적인 수단, 계획 내지 기교로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기타 노사합의의 내용 등을 토대로 결정 (2011. 2. 20. 선고 2010도107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

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마다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기타 노사합의의 내용 및 당해 사업장의 노사관행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성립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배임)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Litigation Cases] - 남성덕 변호사

민사 판례

채무면탈 목적으로 신설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부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

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출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계산으로 제3자가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금지되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대법원은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대법원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환율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대법원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한 권리를 개별 수분양자들이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대법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 이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대법원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시점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대법원은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제662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대상토지의 경우 그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한국전쟁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1980. 12. 31. 그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그 후 1991. 8.경 위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임을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우선 위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약 위 토지가 현황의 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토지의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거나 나아가 이를 전제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로가 가능한 토지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자동차 보관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625 판결)

대법원은 「구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 의해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신청에서,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 입금되는 예금에 대해서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하기 위하여 채권을 특정하는 정도 (대법원 2010.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주요업무사례]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승소

* 담당변호사 - 조춘 변호사 | 김형수 변호사

송신기능이 없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로 분류한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품목에 대한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승소

의뢰인(원고)은 2006. 2. 1.부터 2006. 11. 20.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각 부호기(Encoder), 다중화장치(Multiplexer), Intersect, Protection switch, Decoder(IRD, 해독기), 변조기(Modulator) 및 그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위 수입물품을 관세청의 의견에 따라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로 분류한 관세율표 품목분류표 HSK 제8525.10-2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수입물품이 “통신용 기기”로서 HSK 제8517.50-7020호로 분류되거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기”로서 HSK 제8525.20-5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27. 원고의 위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위 수입물품이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송신기기”로서 송신기능을 가진 물품이어야 할 것인데, 위 수입물품의 어느 하나도 “송신기기”로서 송신기능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기존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위 수입물품은 HS8517.50소호의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에 구체적으로 품목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주장하고, 동일한 품목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수입업체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질의를 하여 세계관세기구의 이사회 및 HS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고, 이에 실례로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었는바, 2009. 9. 21.부터 10. 1.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에서 부호기, 다중화장비 및 변조기의 품목분류를 HS 제8517.62소호에 분류되는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어서 2009년도 제12차 관세청 관세품목분류

위원회에서 위 WCO의 결정을 수용하여 2010. 1. 15. 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품목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세계관세기구에 대한 질의에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 적정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위 관세청의 관세품목 변경 고시 이후, 피고는 부호기, 다중화장치 및 변조기에 대한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관세등을 원고에게 환급하였으나, 위 각 물품의 부분품에 대해서는 직권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부분품의 경우도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변경된 관세품목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여 나머지 이 사건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또한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품목분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극적인 쟁송을 통하여 품목분류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세계관세기구 이사회 및 HS위원회의 품목변경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결국 관세청의 관세품목 변경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분품 역시 완성품과 동일한 품목분류가 적용되게 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의의가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집행부에 대한 무죄판결

*담당변호사- 이준승 변호사 | 홍탁균 변호사 | 전준용 변호사 | 안현준 변호사

법원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 효력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조합 임원의 업무집행과 배임죄/도정법 위반죄 관련 사건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으로부터 설립인가처분 취소판결 및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에 제출할 목적으로 용

역업체를 통하여 組合員(조합원)들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추인동의서를 징구한 행위(소위 'OS용역계역체결')와 관련하여, 비대위측에서는 인가처분 효력정지 중에 조합에 재산상 부담을 주는 계약체결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피고인들을 고발하였고(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 아님), 검사는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안인데,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데, '1심 법원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판결과 더불어 항소심까지 그 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와 같은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효력정지 후에 조합은 어느 범위까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실제로 구청에서는 조합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원의 잠정처분인 효력정지 결정이 있다고 하여도, '조합'이 모든 업무를 '올스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그렇게 본다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판결과 효력정지결정이 내려져 조합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만약 조합의 집행부마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향후 비대위측이 조합 집행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본 형사소송은 성실하게 조합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였고 개인적으로 전혀 이익을 취한 바 없는 피고인들 개인이 처벌받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주택재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합이 추진 중이던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수의 반대파 조합원에 의한 각종 민사·행정소송의 제기 등 온갖 방해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급기야 최초 추진위 승인단계와 그 이후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법원은 인가처분취소와 항소심까지 인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이 취소되고 조합측이 승소하였습니다. 문제는 1심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조합 집행부도 항소심 재판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혹시 효력정지로 인해 조합이 아무런 업무집행도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청에서는 ‘효력정지’ 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히 ‘조합의 업무를 정지’하라는 행정지도 공문까지 보내 왔습니다.

조합으로서는 인가처분취소사건 항소심에서 변론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인동의서’를 징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적어도 절대 다수의 조합원들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제시한다면 ‘사정판결’(인가처분에 하자는 있지만 취소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OS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추인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는 이러한 조합의 업무추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있으니 조합이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데 왜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느냐, 임원들이 조합에 재산상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배임행위이고, 총회결의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도정법위반이다”는 이유로 조합임원인 피고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검찰도 별 다른 법리검토 없이 고발인들의 논리를 수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주택재개발사업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법무법인 세종의 ‘재개발·재건축팀 + 형사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심 행정법원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및 인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추인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심수역원이 소요되는 OS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산상 부담이 되는 대외적 업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도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논리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조합으로서는 더 이상 조합원에 비용 부담이 되는 대외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이 OS용역계약체결을 집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고, 도정법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검사는 위 추인동의서 징구 결의 이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처분청인 서대문구청이 조합에 대해 법원의 인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조합원에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

지의 행정지도를 한 것도 언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변론은, 업무상 배임죄의 전제인 ‘임무위배’와 관하여 ①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정지되는 ‘효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례나 확립된 법리는 없으나, 인가처분은 조합에게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인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따라서 인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은 조합의 대외적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정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 효력정지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여전히 사법상의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지므로 추인동의서 징구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조합 내부적인 업무이므로 제한되는 결코 아니다. ②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의 ‘조합업무를 정지하라’거나 ‘재산상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마라’는 행정지도는 법률상 근거도 없고, 행정지도 자체가 조합의 임의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사법적 법률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변론하여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무죄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위반죄와 관련한 ‘예산상 부담이 되는 행위에 관한 총회결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③ 이미 임시총회에서 ‘예비비 100억원’ 책정이 의결되어 있었고, 인가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행위이며, ④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이 규정되어 있고, 조합에서는 이사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도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변론하여 무죄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무죄판결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은 비대위의 공세에 자칫 재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험에서 벗어나고, 또한 인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는 승리함에 따라, 그동안 지체되고 있던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북아현2구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권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분양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구할 수 없어

* 담당변호사 - 심재두 변호사 | 이승수 변호사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분양을 미루거나 사업계획 자체를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고,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서도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미루거나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천곡동 528번지 일대에 건설, 분양된 벽산블루밍아파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입주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사인 극동주택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소송 당사자인 극동주택개발은 물론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들은 물론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에 대해서까지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극동주택개발과 벽산건설은 부동산, 건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굴지의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세종이 법리적으로 다툴이 있는 쟁점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분양대금의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분쟁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판결은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을 경우에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 및 판시〉

본 사건의 핵심쟁점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관하여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을 경우에,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은 약정일까지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식논리적으로 따지면 위와 같은 수분양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었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① 원고들이 예정대로 입주하여 상당기간 동안 거주해 오고 있었다는 점, ②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 ③ 수분양자들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 ④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사업부지를 신탁받아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재판부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수분양자들은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함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는 대지사용권 역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매각이 불가능해지거나 시가하락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없고,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들이 전유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수분양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책임을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에게 물을 수는 없어

* 담당변호사- 임병일 변호사 | 이승수 변호사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분양은 물론 사업계획 자체가 연기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서도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미루거나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관신도시도 그 중의 하나로서, 계룡건설산업 등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위임하여 수분양자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선물받았습니다.

정관신도시는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장군 정관면 일대에 39,200,000㎡ 규모의 토지를 개발, 공급하고,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건설, 분양함으로써 조성된 대규모 신도시로, 계룡건설산업과 케이알산업은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등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리에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250명이 넘는 수분양자들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분양광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계룡건설산업 등은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들은 물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에 대해서까지도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룡건설산업과 케이알산업은 부동산, 건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굴지의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결과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판결은 특히,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상파 재송신관련 가처분 승소

* 담당변호사- 홍세렬 변호사 | 임상혁 변호사 | 황성욱 변호사

최근 방송사업자들 사이에서 방송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반발로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분쟁은 적법한 계약을 맺고 지상파방송을 송출하는 다른 플랫폼(Platform)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최근 위성방송사업자나 IPTV 방송사업자들도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입장에 동조하여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국내 유일한 위성방송사업자인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2008년 2월경 (주)문화방송과 재송신에 관한 협약을 맺고도 2009년 4월경부터 약정한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당사자간에 협상이 계속되다가 결렬되자, (주)문화방송은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HD급 고화질 방송의 재전송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중단이 불법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며 중단의 금지를 구하는 본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사가 주요 플랫폼에 방송공급을 중단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본건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주)문화방송을 대리하게 된 법무법인 세종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없고(당사자간에 가입자당 지불방식(CPS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은 적법하고, 오히려 신청인의 부당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나아가 이에 따라 SD급 일반화질 방송에 대한 재송신헌약도 함께 종료되었음, 피신청인과 다른 사업자간에 사용대가의 분쟁은 본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재전송 중단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의 사례도 아님 등), 또한 보전의 필요성도 없음(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고, 또한 회피가능했음, 오히려 신청인이 독점 사업자이며, 신청인은 마치 모든 지상파방송이 중단되는 듯이 피해를 과장하고 있음, 케이블사업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각결과와 본건은 보전의 필요성 각 요건면에서 서로 상이함 등)에 대하여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아가 본건이 방송사업자간의 이익을 둘러싼 분쟁이라기보다는 저작권자가 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받고 있는 등 문화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주)문화방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쟁점이된

HD급 고화질 방송 뿐만 아니라, 방론으로써 SD급 일반화질 방송의 재 전송도 중단할 수 있다는 판시를 이끌어냄으로써, (주)문화방송이 (주)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 사용료 협상에서 결정적인 우위에서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결국 (주)문화방송이 원하는 조건에서 협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환 중개인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 담당변호사 - 홍세렬 변호사 | 임보경 변호사 | 문진구 변호사

외국환 중개업체가 퇴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퇴사 직원들을 대리하여 위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이므로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금까지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은 엔지니어인 근로자의 전직으로 인하여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본건은 기술유출 위험과 무관한 이자율 스왑 중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퇴사를 하여 경쟁업체로 전직하였고, 호주 대법원에서 채권자가 동일하고 채무자도 이자율 스왑 중개인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경업금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채무자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신청인 회사가 퇴사직원들의 퇴직의사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퇴사절차가 마쳐진 점, 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거래노하우, 고객별 거래내역 정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점, 경업금지 대한 대가가 제공되지 않은 점, 채무자들이 습득한 지식, 정보 및 노하우는 채무자들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 외국의 판례 및 논문을 기초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명의 분양수입금계좌의 예금채권 귀속에 관한 법리

* 담당변호사 - 임병일 변호사 | 최명호 변호사 | 김주현 변호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A는 시공사와 사이에 공동 명의의 된 분양수입금계좌를 개설하였고,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제세공과금, 대출원리금, 시공사의 도급공사비, 시행사의 개발이익의 순서로 집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신축 주상복합아파트는 대부분 그 분양 및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후 시행사는 법인세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과세관청은 분양수입금계좌의 예금 중 체납세액 상당을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하였으며, 당시 시공사는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도급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공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과세관청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당시 분양수입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에 따른 분양수입금의 집행순서상 시공사의 도급공사비보다 선순위로 집행될 비용은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예금채권은 전부 시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압류는 무효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시행사가 체납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시공사의 도급공사비보다 선순위 집행항목인 '제세공과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분양수입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에서의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을 위한 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지는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아 대신 납부하는 성격의 '부가가치세'는 분양수입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에서의 '제세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인세는 시행사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분양수입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분양수입금을 집행함으로써 각 채권자의 채권을 합의된 순서에 따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이 추심한 예금 중 법인세 상당액을 시공사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명의의 계좌로 분양수입금 등을 수취하고 그 지출에 관하여 순서를 정한 경우, 그 순서에 따라 공동명의자 중 누구에게 예금이 귀속될지 결정된다고 판단된 사례로서, 건축사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공동명의 계좌의 성격과 그 귀속에 관한 실무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불기소처분

* 담당변호사 - 이용성 변호사 | 박성기 변호사 | 안현준 변호사

A외국어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고소인이 자신은 학원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에도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A외국어학원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외국어학원의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고소인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미용학원강사,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 학원 강사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해 온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A외국어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며 학원 측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아니한 채 강사비 등으로 상당한 고수익을 올렸던 자로서, 고소인을 비롯한 일부 강사들이 경쟁학원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원과 A외국어학원 사이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A외국어학원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학원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건을 계기로 학원 소속 모든 강사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될 경우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최대한 넓게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고소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대법원이 학원 강사 등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전통적으로 보여 왔던 기본 법리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A외국어학원의 운영방식, 강좌, 소속 강사의 특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유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유무, 노무제공의 독립성, 보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여부 등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기준에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여, 고소인이 A외국어학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강의제공 계약관계를 형성·유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근로감독관 및 검찰 역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고소인에 대하여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을 최대한 넓게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대법원 판례의 적극적 태도 변화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러운 현상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당한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만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양산해 내는 것은 경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일수록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법리에 충실하게 철저히 대응한다면 선량한 기업주를 보호하고 실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계약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담당변호사 - 김용담 변호사 | 조춘 변호사 | 박지윤 변호사

최근 장기보험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업계의 이목을 끌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7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자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보험업법(2006. 08. 29. 법률 제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및 항소심은 모두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료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으나, 1심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보험료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 납입일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판시한 반면, 항소심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자가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비로소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i)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ii) 보험법이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 및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각각 1년과 2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며, (iii) 나아가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종속시키고 보험계약자의 자의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하게 되어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선의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결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파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인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62조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불입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았어도 사기죄가 되지 않음

* 담당변호사 - 이준승 변호사 | 김소연 변호사

우리 주변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위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해 놓고 보험사고도 수회 발생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을 다액 수령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하여 의도적인 보험금편취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그러한 경위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소사실은 보험금 청구건 마다 ‘보험사고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특정해야 하는 바, 이 사건 기소에는 상당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즉 법무법인 세종은 (1) 피고인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을 하였는바 입원 기간 중에 보험모집업무를 한 것을 보면 허위임에 틀림없다는 부분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한 상해 및 입원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험모집업무의 특성을 설명하여 입원 상태에서도 보험모집실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함을 납득시켰습니다.

한편 (2) 피고인의 가족이 제3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보험 사에는 단순히 부딪혔다거나 넘어졌다고 하여 경위를 달리 신고한 부분의 공소사실(검사는 보험사의 면책약관상 폭행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음)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고를 허위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면책약관상 폭행은 쌍방폭행을 말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실대로 신고했어도 여차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라 보험사의 손해 및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텐데 피고인의 은폐로 보험사의 구상권이 행사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범무법인 세종은 해당 보험계약은 모두 '인보험'(cf.손해보험)으로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그러한 특별한 합의가 없음을 논증하여 검사의 주장도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논박을 지켜본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범무법인 세종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공소사실 모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배터리팩 발화에 따른 제조물책임 사건 승소

* 담당변호사 - 박교선 변호사 | 송재섭 변호사 | 박은희 변호사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배터리팩 발화에 따른 제조물 책임이 문제된 소송에서, 범무법인 세종은 배터리셀(리튬 폴리머 충전지) 제조사가 배터리팩 발화에 따른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배터리팩은 크게 ①수 개의 배터리셀과, ②과충전 또는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회로(Protection Circuit Module, PCM) 및 ③케이스로 구성되는데, 원고인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조사는 배터리팩의 발화 원인이 배터리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배터리셀 제조사는 원고의 지시에 따른 배터리셀의 규격이 배터리팩 규격보다 커 과중한 압력을 받았거나 또는 원고가 설정한 내비게이션 본체의 과방전 방지전압이 낮았기 때문에 발화가 일어났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무법인 세종은 원고인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조사를 대리하여, ①국제기술규격에 따른 배터리셀 단락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샘플에서 발화가 일어났다는 점, ②배터리셀 제조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충·방전 실험에서도 일부 샘플에서 발화가 일어났다는 점, ③통상적으로 과방전이 직접적으로 배터리 발화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④피고는 배터리셀 규격 문제에 관하여 경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과학적·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배터리셀 발화가 배터리셀 외의 물리적·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셀 자체의 제조상·설계상 결함에 기인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범무법인 세종은 흡연소송 등 제조물책임 소송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보여 왔는데, 이 사건에서도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발화 사고에 대해 배터리 제조사의 제조물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서울시와의 용수료 분쟁 승소

* 담당변호사 - 황상현 변호사 | 임병일 변호사 | 양계성 변호사 | 이승수 변호사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간의 5년여에 걸친 용수료 분쟁이 결국 수자원공사의 승리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서울시는 지난 1988. 12. 30. 충주댐에서 공급되는 생·공용수를 암사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내용의 용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자양취수장, 풍납취수장, 구의취수장, 강북취수장 등에 대해서도 순차로 용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수자원공사와 서울시는 서울시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한강 유수, 즉 기득사용물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용수료를 납부하는 내용으로 용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취수량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취수량이 기득사용물량에 미달되는 취수장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기득사용물량의 배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가 기득사용물량을 제대로 공제받

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 10.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는 2004. 2.경 수자원공사에게 기득사용물량을 총량으로 인정해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산한 물량에서 전체 취수장의 기득사용물량을 합산하여 공제한 물량을 기준으로 용수료를 산정하거나 잉여 기득수리물량을 다른 취수장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자원공사는 위와 같은 요구가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질악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신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용수료를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는 액수 상당을 임의로 공제한 나머지만을 용수료로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수자원공사는 2005. 8. 서울시를 상대로 9개월분의 미지급 용수료 약 11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용수계약의 내용,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한 치의 다름도 없는 법적 공방을 전개하였고, 수자원공사가 5년여 동안 진행된 법적 공방에서 승리함에 따라 과거 지급받지 못한 수백억 원 규모의 용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향후에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용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화옵션계약 체결의 의미 밝혀 승소

* 담당변호사 - 강신섭 변호사 | 이준승 변호사 | 김용호 변호사 | 이창훈 변호사 | 유무영 변호사

이 사건은 A은행과 기본적인 외환거래약정을 토대로 개별적인 수개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수출입업체인 피고가 통화옵션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은행이 통화옵션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미지급금과 계약해지에 따른 결제액

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소위 세간의 이목을 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의 일종이나, 일반적인 키코소송과는 달리 통화옵션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은행과 구두로 통화옵션거래를 요구하였으면서도 은행의 요구하는 '옵션거래동의서'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의 날인을 보류하면서 은행에게 보내지 않은 사정을 들어 통화옵션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i) 통화옵션계약의 일반적인 체결과정을 상세히 밝히면서, 통화옵션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구두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 ii) 통화옵션계약과 같은 외환상품은 환율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체결시점이 중요하므로 구두로 체결될 필요성이 있고 일반적으로도 구두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iii) 이은행이 피고와 체결한 기본적인 외환거래약정상 통화옵션계약이 구두로 체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점 등의 근거를 중점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로써 증권금융업계의 전통적인 강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여 온 법무법인 세종은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오래 기간 쌓아온 실력과 명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쌍용건설 M&A 무산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 허용될 수 없어

* 담당변호사 - 강신섭 변호사 | 이승수 변호사 | 황은하 변호사

인수합병(M&A)이 무산될 경우의 이행보증금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액수가 M&A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다보니, 매수자측은 M&A가 무산된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액수도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쌍용건설의 M&A가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이행보증금의 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주

목받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쌍용건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쌍용건설 주식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종입찰대금(약 4,62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231억 원 상당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7개 금융기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한파가 몰아친 상황에서, 동국제강은 예비심사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자산가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최종입찰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정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측은 위와 같은 요청이 합의내용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231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31억 원을 몰취당하게 된 동국제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법원(제32민사부)은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허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동국제강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 사건을 기업 M&A와 관련된 다수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에 위 사건을 위임하였고, 전문 변호사들이 변론 과정에서 날카로운 법해석은 물론, 기업 M&A 실무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단 한 톨의 이행보증금 반환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M&A가 실패한 상황에서 이행보증금까지 반환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본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행보증금의 반환 염려는 물론 향후 쌍용건설에 대한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데에도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 판결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3,150억 원에 이르는 대우조선해양 매각관련 이행보증금 반환사건과 향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현대건설 매각관련 이행보증금 2,755억 원의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양메이저 유상증자 자문

* 담당변호사 - 서태용 변호사 | 정준혁 변호사 | 이충훈 변호사 | 정혜성 변호사

동양메이저는 2011. 3. 보통주 및 우선주를 발행하여 약 3,000 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Capital Market팀은 동양메이저 및 동양종합금융증권을 대리하여 동양메이저 유상증자 및 추가 상장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태용 변호사, 정준혁 변호사, 이충훈 변호사, 정혜성 변호사가 자문을 주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Capital Market 팀은 삼성카드, 삼성생명, 진로, SK C&C, 동양생명, 대한생명, 만도 등 국내외 IPO 거래 및 Capital Market 관련 주요 업무에 대부분 참여해 오고 있는 바탕으로 탁월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동양생명 매각 등 자문

* 담당변호사 - 이창원 변호사 | 이성훈 변호사 | 정준혁 변호사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파이낸셜, 동양캐피탈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자회사인 동양생명의 지분 46.5%를 보고펀드가 운영하는 투자목적회사에 약 9,000억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2011. 3. 23.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양메이저는 리더스PEF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동양시멘트 지분 약 36%를 약 3270억원에 취득하는 거래를 2011. 3. 21.에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M&A팀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을 대리하여 동양생명 매각 건과 동양시멘트 지분 인수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창원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정준혁 변호사가 자문을 주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M&A팀은 국내 대부분의 주요 M&A 거래에 대부분 참여해 오고 있고, 특히 그룹 구조 재편 등 관련 업무에 탁월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소식]

2011 신입변호사 18명 합류

사법연수원 제40기 신입변호사와 법무관(연수원 37기) 18명이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하게 되어 소개 드립니다.

〈법무관 - 사법연수원 37기〉

- 권성은 - 한양대 법학
- 김종수 - 서울대 법학
- 박준현 - 서울대 법학
- 송인철 - 한양대 법학
- 신정하 - 서울대 법학
- 이은철 - 서울대 법학

〈연수원 - 사법연수원 40기〉

- 김원국 - 한국외국어대 영어
- 문진구 - 서울대 법학
- 송동원 - 동국대 경찰행정학
- 오새론 - 서울대 법학
- 윤재원 - 연세대 법학
- 이승재 - 서울대 법학
- 이해정 - 연세대 법학
- 조성은 - 연세대 법학
- 최가진 - 서울대 법학
- 최윤희 - 서울대 경영학
- 최정은 - 서울대 법학
- 한예선 - 고려대 법학

조영재 미국변호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외 다수 기관 위원으로 위촉 , 한-EU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세미나 발표

조영재 변호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외 다수 기관 위원 위촉

법무법인 세종의 조영재 미국변호사가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및 2010년(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정부(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등) 및 민간기업 근무 경험을 토대로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기관의 FTA, WTO 등 국제통상법률, 무역구제사건, 외국인투자, 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자문을 주로 맡고 있으며, 현재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FEZ) 성과평가위원, 지식경제부 지방투자보조금 심의위원, 지식경제부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위원, 지식경제부 인사평가위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수출관리자문위원, 기술표준원 제품리콜 심의위원,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자원정책연구회 상임연구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세미나 발표

법무법인 세종의 조영재 선임외국변호사는 2011년 7월1일 발효 예정인 한-EU FTA에 대비하여 한국무역협회가 6월 7일 개최한 『한-EU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세미나』에서 “분야별 예상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분야별 예상쟁점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및 원산지규정 등 실무적인 내용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관련 업계 및 유관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영석 변호사, AMCHAM서 노동법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세종 노동 전문팀의 기영석 변호사가 5월 24일 AMCHAM Legal Affairs Committee Meeting에서 “Multiple Unions Permitted from July 2011 - A Practical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New Law and Its Impact on Businesses and HR” 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영석 변호사는 노동법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투자, M&A, 적대적 기업인수, 노동, 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에서 법학석사 (LL.M.)를 취득하였고, 또한 세계 우수 로펌인 Allens Arthur Robinson의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에서 Foreign Associate로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효종 변호사, 한국도산법학회 세미나 발표

법무법인 세종의 최효종 변호사가 5월 21일 한국도산법 학회가 주최하는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기업회생절차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합니다. 최 변호사는 최근의 주요 기업회생사례를 소개하고, 도산법 관련실무의 개선방안제언 등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입니다.

최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와 파산,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법정관리 M&A 등을 주된 분야로 하고 있으며,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 최대규모의 기업회생절차 사례인 쌍용자동차 회생사건 실무총괄역을 맡아 회생절차개시신청시부터 M&A 절차종결까지 제반 법률자문 및 관련소송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다수의 정리회사(대한통운, 동해필프, 건영, 한일합섬, 나산 등) M&A과정에서 정리회사 또는 인수인을 대리하여 법률자문 및 그에 파생되는 여러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온바 있으며, 수많은 회생회사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도산법 관련 법률자문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개최된 여러 도산법 관련 세미나에 발표자 또는 패널로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교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섭 변호사, 인재유출, 전직금지 & 영업비밀 주제 강의

법무법인 세종의 지적재산권팀의 송재섭 변호사는 5월 17일, 중견기업포럼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에서의 인재유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의 핵심인력들의 전직을 둘러싼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업경영 및 실무에 실제적인 법률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재섭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조물책임 · 영업비밀 · 정보통신 ·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변호사, M&A 활용방안 세미나 발표

법무법인 세종의 이성훈 변호사는 5월 17일 한국M&A투자협회가 개최하는 ‘M&A 활용방안, 사례, 인수금융 세미나’에 초빙되어 M&A 법률 분야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 변호사는 M&A 수행과 관련한 제반 법규사항, 준수해야 할 내용, 주의해야 할 규정, 활용할 수 있는 규정 등과 사례를 통한 M&A 방법 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 변호사는 M&A 전문변호사로, KP케미칼의 파키스탄 석유화학회사 및 영국내 석유화학회사 인수, 롯데 그룹의 중국 슈퍼마켓 체인점 Times 인수, SK텔레콤의 SK네트웍스 회선사업 부문 인수, SK에너지의 윤활유 사업부문 분할, 금호 그룹의 금호렌터카 매각, 오리온 그룹의 온미디어 매각 등 수많은 주요 M&A 거래를 수행하였습니다.

정준혁 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세미나 초빙

법무법인 세종의 정준혁 변호사는 5월 13일 사단법인 한국기

업법학회가 개최하는 춘계학술세미나(워런트제도의 국제적 법제동향과 입법과제)에 초청되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정 변호사는 프랑스의 워런트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입법적 시사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정 변호사는 M&A 및 회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M&A, 기업지배구조, Private Equity, 유럽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참여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봉 변호사, Privacy Global Edge 2011 참가, '개인정보보호법 워크숍' 참가

Privacy Global Edge 2011 참가

법무법인 세종의 장주봉 변호사는 지난 4월 27일, CFO포럼이 주최한 'Privacy Global Edge 2011'에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주제로, 기존에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과의 차이점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주봉 변호사는 전기통신, 방송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 기업의 법률자문 및 인터넷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전자금융문제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여러 기관 및 학회에서 발표자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워크숍' 참가

법무법인 세종의 장주봉 변호사는 2월 16일,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주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워크숍'에 참석하여 "기존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점"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정보주체 동의와 관련하여 기존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국내외 정보침해와 관련한 소송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실제적인 법

률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주봉 변호사는 전기통신, 방송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 기업의 법률자문 및 인터넷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전자금융문제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명현 미국변호사, 사내변호사아카데미 초청강연

법무법인 세종의 류명현 미국변호사는 지난 4월 14일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에서 주최한 '2011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강연자로 초청받아 영문계약서 검토실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류명현 미국변호사는 Senior Foreign Legal Consultant로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인수합병,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및 벤처캐피탈 및 일반 회사거래입니다. 여러 국내외 기업들을 대리하여 많은 국제투자 및 인수합병거래를 성사시켰으며, 현재 세종 M&A 업무그룹에서 다양한 기업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재영 변호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세종의 장재영 변호사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자원순환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향후 2년간 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자원재활용"에 관한 정책 심의 및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장변호사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자동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건설업, 유통업, 게임업 등)의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연구회 자문,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개정안 자문변호사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연구회 자문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지침 및 분야별 지침 제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연구회에 자문변호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 3. 11.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게 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게 되므로 향후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방송통신과 개인정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업무를 다수 자문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개정안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작업반의 자문변호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 3. 11. 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조화를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 3.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로 법률개정

작업반을 구성하여 1년 동안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백 변호사는 법조계 전문가로 선정되어 위 두 개의 법률 개정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방송통신과 개인정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를 다수 자문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국제조세 법규 정비 전문가 회의 위원

정종채 변호사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국세청 국제조세 법규 정비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 전문위원으로 초빙되었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국제조세 관련 불합리한 과세기준 및 법령 정비를 위해 각계로부터 수집된 세법령 등 개선 건의사항을 전문가회의에서 검토 및 토의하고, 개선할 사항으로 확정되면 세법령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고시 등은 자체개선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는 행정고시 재경직(41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시보), 본청 징세과 사무관,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으로 봉직한 바 있습니다. 조세 및 공정거래 등 분야의 주제들에 대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각종 학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희찬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학술대회

법무법인 세종의 변희찬 변호사가 2월 25일 개최된 한국세법학회 제102차 정기학술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국세기본법 판례회고’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변 변호사는 다수의 조세관련 소송 및 행정소송을 맡아 주도하였으며,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조세조에 소속되어 조세관련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조세법 주임교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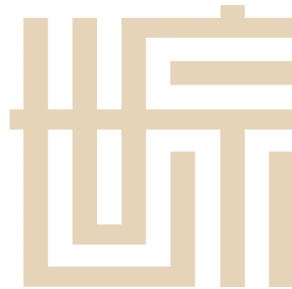
맡아 3년간 조세법총론 등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세무사회에 위촉되어 세무사 등록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 과목을 강의하고, 사법시험 1차과목인 조세법의 출제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IBA-KBA 주최 Competition Law Conference 후원 및 발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4월 28일~29일, IBA와 KBA가 공동주최한 Competition Law Confence에 후원 및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외 경쟁법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가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당 법인 공정거래팀의 임영철, 최종혁, 김현아, 박주영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임영철 파트너 변호사는 29일에 진행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 카르텔 조사와 집행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공동의장으로 세션을 주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은 관련 재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등 경쟁법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공정거래분야 Best lawyer로 선정된 임영철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SHIN&KIM

법무법인 세종

Seoul Office Tel : + 82 2 316 4114 | Fax. +82 2 756 6226 | E-mail. shinkim@shinkim.com | homepage. www.shinkim.com
Ace Tower 6th Floor, 1-170, Soonhwa-dong, Chung-Ku, Seoul 100-172, Korea

Beijing Office Tel : + 86 10 8447 5345 | Fax. +86 10 8447 5349 | E-mail. china@shinkim.com
1008 Air China Plaza, No.36, Xiao 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7, P.R China

Shanghai Office Tel : + 86 21 6235 0411 | Fax. +86 21 6235 0415 | E-mail. china@shinkim.com
808 Far-east International Plaza A, 319 Xianxia Roa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0051, P.R. China